변호사의 직무위반

지난 23 년간 뉴욕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보니 유감스럽게도 주변에서 변호사의 직무위반에 관련 된 문의가 적지않게 들어옵니다. 한 예를 들자면, 김씨는 차량사고에서 상내방의 과실때문에 상해를 당했습니다. 그는 업소록에서 상해사고 변호사들중 가장 크게 광고를 낸 변호사를 찾은 후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. 그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였고.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변호사 고용계약서에 김씨는 서명하면서 사건을 그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. 그 후 사건이 어떻게 처 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. 그 변호사는 항상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통 화를 할 수가 없었고. 사무장하고만 통화하게 되었다. 하도 답답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변 호사는 만날 수도 없고. 이제는 사무장도 김씨를 피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.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은 우리 주변에서 적지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보험 에이전 트와 함께 일을 하며, 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습니다.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은 대부분 그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에 불과하지 뉴욕주 변호사 라이센스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닙니 다. 대부분 그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에 불과하지 뉴욕주 변호사 라이센스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. 대부분 이런 사무장들의 주 업무는 새 사건을 확보하고 고객관리를 잘해서 그 변호사가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각종 문제의 발생은 변호사가 사건의 중 요한 부분을 사무장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고객의 사건에 충실하기 보다는 소홀하게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변호사가 될 때 공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선서합니다. 이 의무 중의 하나가 고객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변호사는 그들의 고객과 소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한다던가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각종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 선임 및 계약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. 변호사하고는 한번도 상담을 안해보고 오직 사무장하고만 상담한 후 변호사 선임계약을 했다면, 과연 변호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장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? 본인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지 사무장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.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 후 모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 후 변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변호사가될 때 공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선서했지만,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함으로 과연 이 변호사가 나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충실할 것인지, 아니면 너무 바뻐서소홀이 할 것인지, 아니면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(Know-How)이 있는지를 확인한후 선임 계약을 하면 아마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부도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설명하겠습니다.

첫째, 본인의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. 상해사고 사건은 여러가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새 변호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. 만약에 너무 늦게 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새 변호사가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거절할 것입니다.

둘째, New York State bar AttorneyGrievance Committee(212-401-0800)에 불만 사항을 고발할

수 있습니다. 변호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뉴욕주 변호사 불평호소기관에 접수되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.

박응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: 718-463-7790 / 917-562-9143